

자체평가 규정

2009. 06. 30. 최초제정	2024. 08.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4. 10. 01. 부분개정
2014. 02. 01. 부분개정	2024. 12.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5. 12. 01.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6. 02. 01. 부분개정
2018. 10. 01. 부분개정	2026. 09. 07. 부분개정
2020. 10. 01. 부분개정	
2021. 07. 01. 부분개정	
2023. 10.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평가영역은 대학자체평가 편람에서 정한다.<개정 2026.09.07.>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산출기준 및 평가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자체평가 편람에서 정한다.<개정 2026.09.07.>

제6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9.07.>

제2장 평가기구

제7조(평가책임자)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책임자를 둔다.

② 평가책임자는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평가방법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평가담당부

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공정한 평가의 시행과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7.01.>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5.01., 2018.10.01., 2020.10.01., 2021.07.01., 2023.10.01.>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 및 담당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07.01., 2023.10.01., 2024.03.01., 2024.08.01., 2024.10.01., 2024.12.01.>

④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1.07.01.>

⑤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07.01.>

1. 대학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2. 대학자체평가 자료의 분석과 평가 실행
3. 자체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회의록)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24.12.01., 2025.12.01.>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2조(자체평가 편람의 개발) 평가담당부서는 대학자체평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편람을 개발·개선하여 이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21.07.01., 2026.09.07.>

[중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07.01.>]

제13조(평가계획 수립) 평가담당부서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개정 2026.09.07.>

[제12조에서 이동, 중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07.01.>]

제14조(평가자료 제출)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평가담당부서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개정 2026.09.07.>

[제13조에서 이동, 중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07.01.>]

제15조(평가실시) ①평가담당부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수합 및 정리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21.07.01.>

[제14조에서 이동, 중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07.01.>]

제16조(현장실사)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07.0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07.01.>]

제17조(평가결과 보고 및 심의) 평가담당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개정 2021.07.01., 2026.09.07.>

제18조(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 ①평가담당부서는 자체평가결과를 내·외부 구성원들에게 공유 및 공지한다.<신설 2021.07.01.>

②평가담당부서는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 부서별 개선과제의 이행 추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02.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